

●국무조정실공고 제2023-205호

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중앙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3일

국무조정실장

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정 기관 공고

□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정 기관

가. 기관명 : 재단법인 청년재단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

다. 수행업무 :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,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·관리함

라. 지정기간 : 2024.1.1.부터 2026.12.31.까지(3년)